

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길영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817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5월 26일

발 의 자: 김길영 의원(1명)

찬 성 자: 김재진, 김태수, 남궁역,
남창진, 송경택, 윤종복,
이상욱, 임규호, 홍국표
의원(9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시가 시민의 생활체육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,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육성하고자 '스포츠데이'를 지정하고자 함
- '스포츠데이'를 통해 생활체육 및 운동에 대한 관심도를 환기시키고 시립체육시설 입장료 감면 등의 혜택을 통해 시민들에게 운동을 권장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시장이 생활체육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체육 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스포츠데이를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함
- 나. 시장이 시가 설치 및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입장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국민체육진흥법」, 「생활체육진흥법」, 「지방자치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장에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2조의2(스포츠데이 지정 및 운영) ① 시장은 생활체육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체육 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스포츠데이를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스포츠데이에 「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시가 설치·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입장료,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22조의2(스포츠데이 지정 및 운영) ① 시장은 생활체육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체육 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스포츠데이를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스포츠데이에 「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시가 설치·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입장료,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.</u></p>

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조항	추계대상 여부	판단 내용
제22조의2(스포츠데이 지정 및 운영)	△	스포츠데이 관련 체육시설 입장료, 사용료 감면에 따른 세입감소가 발생하나 서울시 관련부서 문의결과 현재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객관적 추계가 곤란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2항)
 - 안 제22조의2(스포츠데이 지정 및 운영)의 스포츠데이 관련 체육시설 입장료, 사용료 감면 세입감소액은 현재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객관적 추정이 곤란함

[참고] 추계 가능성 및 재정소요 영향 검토

- 스포츠데이 관련 체육시설 입장료, 사용료 감면 세입감소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하려면, 우선 ① 스포츠데이 지정일자 확정, ② 공공체육시설 입장료·사용료 감면을 확정, ③ 감면 대상시설 포함여부에 대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(타 지자체 유사사례¹⁾를 통한 자체 추계 또한 곤란)
 - [① 스포츠데이 지정일] 요일별 이용횟수가 상이할 가능성이 높아 지정요일에 따라 세입감소분도 달라질 것으로 보여 요일지정 확정이 선제될 필요가 있음
 - [② 시설 입장료·사용료 감면율] 감면율에 따라 세입감소폭이 상이하여 「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별도로 감면율이 규정되어야 비로소 합리적 추계가 가능할 것임
 - [③ 감면 대상시설 포함여부] 전체 또는 일부 시설 감면 여부에 대한 결정이 선제되어야 하며, 해당 결정은 정책적 판단의 영역이므로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는 현재로서는 합리적 추계가 곤란함

1) [합리적 추계 곤란] 타 지자체에서 기추진하고 있는 유사한 사례의 경우 스포츠데이 운영이라는 면에서 유사성을 가지나, 시설규모, 이용대상, 요일별 이용횟수 등이 상이할 수 있어 이를 준용하여 비용을 추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

- ① 안양시 스포츠데이 사례
 - 일자 : 매월 첫 번째 일요일 오전 9시~오후 6시
 - 대상 : 안양시민 전체
 - 내용 : 안양도시공사 운영 체육시설 무료개방
- ② 화성시 스포츠데이 사례
 - 일자 : 매월 첫째 주 토요일
 - 대상 : 화성시민 전체
 - 내용 : 도원체육공원, 반월체육센터, 여울공원, 남양체육공원 축구장과 화성드림파크 야구장 등 무료개방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주 병 준
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
추계분석관 손 제 승

☎ 02-2180-7953

e-mail : smclt22@seoul.go.kr